



### 제 목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근로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겨울철 독감예방접종을 하려고 한다면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 중에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겨울철 독감예방접종에 따른 소요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제 목 | 예선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 문의

오션테크, 해상크레인 등을 끄는 예선도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나요?

⇒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다만, 기항지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 총톤수가 3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3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등이 포함됩니다.

### 제 목 | 외국인 근로자 취업신고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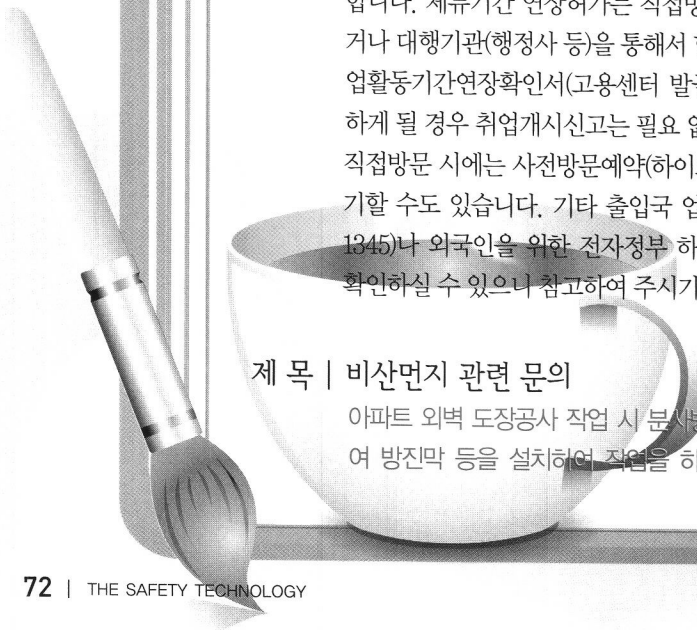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신고 후 3년이 다가오는 지금 외국인고용 지원센터에서 재근로계약을 하고 취업신고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방문취업 3년 만기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취업신고가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직접방문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을 이용하거나 대행기관(행정사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고용센터 발급), 수수료, 사진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취업개시신고는 필요 없음).

직접방문 시에는 사전방문예약(하이코리아)을 하는 것이 편리하며, 예약을 안 했을 경우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비산먼지 관련 문의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작업 시 비산방식(스프레이)을 할 경우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스프레이건 비산방지막을 사용할 경우 비산방지



시설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환경관련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제10호에 따라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 목 | 방직공장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

섬유업계(방직공장) 특성상 새로운 기계나 설비를 설치하여도 높은 수준의 소음(90dB이상)이 발생하는데 매번 측정결과가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개선방법이 없는데 매년 2회씩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은 당해 유해인자의 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은 물론 근로자의 노출정도 등을 평가하는 데에 있으므로 작업환경은 주기적으로 측정·평가되어야 합니다. 현행 측정주기(6월에 1회 이상)는 사업장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 목 | 시료용으로 미량의 화학약품 사용 시 작업환경측정대상여부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서 오염된 물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용으로 미량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데, 이 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사용(취급)하는 경우,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으로 월 작업 시간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됩니다. 단시간 작업은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입니다. 여기에도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됩니다.

### 제 목 | 전동식지게차의 건설기계 해당 여부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경우 등록, 조종면허 등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여 전동식으로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등록, 조종사면허 등 제반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지게차의 사고발생 시 적용법규, 사용장소의 구내제한여부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